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령 요약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산재가 많은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사업장, 산재은폐사업장 등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등에 공표한다는 내용과 행정형벌에서 대폭 전 환된 과태료를 적극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측정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와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신설하여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틀 을 마련하였다.

1.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신설 가. 신설내용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등을 일반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 의3 및 시행규칙 제3조의3)

※ 공표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 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개 정 내 용 (신설)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①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 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 하는 사업장
 - ②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③ 산업재해발생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중에서
- 산재발생건수, 재해율 및 그 순위 등을 관보,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공표할 수 있음

나. 신설이유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업주의 자율적 인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다발사 업장,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 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을 관보, 인터넷 등에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 남녀고용평등법 제32조(고용평등이행실태 등의 공표):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평등이행 실태, 그 밖의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 처리):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 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등을 할 수 있도 록 규정

■ 공중위생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업자에게 통보하고 이 를 공표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56조의2(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범죄방지제도): 일정한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

② 외국사례

미국, 영국의 경우 범위반 사업주의 범위반 사실, 처벌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2. 산업재해 기록·보존 의무 신설

가. 신설내용

유사·동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의 기록·보존 의무를 새로이 부여함(법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의2)

개 정 내 용(신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①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 다만, 산업재해조사표를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에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이를 갖출 수 있도록 함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산재보상처리에만 급급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 등 예방조치에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의 기록·보존 의무를 부여하여 사업주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종재해의 재발방지 및 근로자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유사 재해 발생 현황 - 추락 : '01년도(9,764명) → '02년도(10,835명) 다협약국에서 추락(18,847명) → '02년도(18,146명)

미국은 사고나 직업병 발생지 즉시 재해사실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7,000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유효기간 설정

가. 개정내용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유지를 위해 성능검정의 유효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하고 동기간 만료 시 재검정을 받도록 함(법 제33조제3항·제35조제1항, 시행규칙 제46조의2·제46조의5·제61조 및 제65조의2)

개 정 내 용	
개정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 및 작업에 필요로 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함(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중진	○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정을 받아야 함(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산업안전관련법

개정내용	
종전	○검정신청인은검정에필요한시료(품목에따라1~5개)를검정기관에제출(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제5조및규칙제64조제1항)
개정	○신규검정시에는중전과같이신청인이시료를제출하고, 재검정시에는검정기관이임의의시료를선택(샘플링)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제출토록함(시행규칙제46조의2제2항,제61조제1항)

신설내용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등4종의방호장치와송기마스크등2종의보호구에대하여는검정유효기간을5년으로 -그외는3년으로설정(등록업체에대하여는최장5년으로함)(규칙제46조의5및제65조의2)	

나. 개정이유

① 최초 성능검정에 합격하여 약 3~5년이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부품의 재질, 가공지름 및 디자인 등이 달라지게 되어 최초 성능검정 당시와는 품질이 달라지게 되어 재검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② 종전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신규 1회 검정만으로도 이후 생산되는 동일규격의 제품 전체에 대하여 합격품으로 인정함으로써 제품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제조기술수준에 따라 재검정주기(검정유효기간)를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하여 최초 성능검정 합격당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특히, 등록업체(법 제35조의2 관련)에 대하여는 재검정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여 등록제 활성화 및 불량제품 생산을 유도함.

시료제출방법 중 재검정시에는 검정기관이 제조공장에서 생산·보관하고 있는 제품 중 임의로 샘플링한 제품을 시료로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지속적인 안전성능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일괄·집단적 사후관리제도)

※ 검정유효기간

“검정유효기간”이라 함은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말함

▷ 3년 : 방호장치(프레스방호장치, 용접장치 안전기, 자동전격방지기,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 및 압력제한스위치, 연삭기 덮개, 등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절연용방호구 및 절연용보호구, 추락·붕괴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등 10종),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호복 등 9종)

▷ 5년 : 방호장치(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과부하방지장치,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동력식수동대패 날 접촉예방장치 등 4종), 보호구(귀마개, 송기마스크 등 2종) 사례

① 일본

프레스 방호장치·자동전격방지기·등근톱 방호장치 등 7종과 안전모는 매 3년마다, 방진마스크 등 2종은 매 5년마다 재검정 실시

② 미국

안전벨브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재검정 실시: “재검정결과 불합격율”로써 전체 방호장치·보호구 산업의 기술 및 품질관리 수준 평가

4. 미검정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가. 개정내용

미검정, 불합격, 합격취소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해 수거·파기 명령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법 제33조제7항·제8항, 제35조제5항·제6항, 시행규칙 제46조의11 및 제70조)

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서는 공히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사후 조치를 강화함.

불량품 수거 및 파기에 필요한 절차 등 시행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다만, 불합격 사유가 경미한 때에는 기업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지방노동관서에서 그 부분품만을 따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함.

5. 검정대상 보호구 확대

가. 개정내용

유기화합물에 의한 독성간염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화학용 보호복·안전장갑을 검정대상에 새로이 추가함(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0조제5호 및 제11호)

개 정 내 용	
○ 미검정품, 불합격품 또는 합격취소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u>이를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음</u> (법 제33조 제7항·제8항, 법 제35조제5항·제6항, 규칙 제46조의11 및 제69조)	
○ 수거·파기명령을 하는 때에는 <u>그 사유,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거·파기를 명하도록 하며,</u>	
<u>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제품을 수거하여 부분품의 교체 등으로 사유해소시 해당 부분품을 파기하도록 할 수 있고,</u>	
<u>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이상의 조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지방노동관서는 그 이행결과를 노동부장관에 보고함</u> (법 제46조의12)	
<u>불량품이 작거나 수거·파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등 문제가 있어 중전 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품 등 불량품에 대한 사후 조치 방법이 방호장치 및 보호구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치시키고 앞으로는 불량 방</u>	

개 정 내 용	
중 전	○ 안전장갑 및 <u>방열복</u> 에 대한 검정 실시(시행령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개 정	○ 안전장갑 및 <u>보호복</u> 에 대한 검정 실시(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개 정 내 용	
중 전	○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u>감전</u> 을 방지하기 위한 것(규칙 제60조제5호)
개 정	○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u>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u> 위한 것(규칙 제60조제5호)

산업안전관련법

개정내용	
종전	○ 방열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규칙 제60조제11호)
나. 개정내용	○ 보호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규칙 제60조제11호)
개	○ 보호복(1) 및 (2)의 규격 및 편성을 통한 인체에 흡수되어 침투되는 유해물질의 유입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동종 유형의 직업성질환 예방에 필요한 검정보호가 없으므로 근로자독성간염중합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장갑 및 보호복을 검정대상 범위에 추가(2005.11부터 시행)

관리가 필요하여 이를 자체검사 대상에 새로이 포함 시킴.

6. 자체검사 대상의 확대

가. 개정내용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로울러기를 추가 ※ 01.4.7월 산업폐기물에 의해 근로자(6명), 01.9월 산업현수형(2명)이 집단적으로 독성간염 발생

* 로울러기(1대)가 2개 이상의 압통용언어로 하여 각 각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고무· 고무화합물)가 개질내용 또는 합성수지를 로울러 사이로 통과시켜 로울러의 압력에 의해 3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기술지도 대상을 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소성가공하는 기계업 * 로울러기(1대)가 2개 이상의 압통용언어로 하여 각 각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고무· 고무화합물)가 개질내용 또는 합성수지를 로울러 사이로 통과시켜 로울러의 압력에 의해 3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기술지도 대상을 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소성가공하는 기계업
--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그간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된 소방설비공사와 문화재수리공사 및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도 동 기술지도를 받도록 함(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내용	
종전	○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
나. 개정내용	○ 프레스 등 13종인(규칙 제73조)
개	○ 로울러기를 생화학이론에 관계없이 실시처수 및 철수 등의 작업에서 근로자의 인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4종(9에)에 합쳐 17종인(규칙 제73조) 신체장애 등의 치명적인 산업 재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자체검사를 통한 안전 확보

개정내용	
종전	○ 기술지도대상 건설산업기부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로씨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행하는 자
개	○ 기술지도대상 공사금액 2억원(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개 정 내 용	
종 전	○ 기술지도 제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공사
개 정	○ 기술지도 제외 (삭제) 나. 동시행위유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정공 차임이 2억 원 이하인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무를 건설현장 에서 책임지는 경우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 포함 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 으로 이들을 기술지도대상으로 추가

하여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있음.

이가 길거나 발파작업 등으로 위험요소가 훨씬 많음에도 3월 또는 6월에 1회 실시하는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중 터널공사, 건축공사 중 굴착공사만 해당되더라도 당해 건설현장 전체에 대해 기술지도가 면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시킴

8. 제조 등 금지대상물질 확대

가. 개정내용

중전 8종의 금지대상물질 중 벤지딘과 그 염 등 3종을 삭제하고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 3종 추가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금지물질 55종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포괄하여 금지하도록 함(시행령 제29조 관련)

※ 2002년도의 경우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자는 2,844명으로 전체 건설재해(19,925명)의 14.3%를 차지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도 위험성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기술지도대상 공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금번 개정을 통해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건설공사'의 범위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공사를 제외하고 있음
○ 기술지도대상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기술지도는 월 1회 기준으로 실시하는 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는 굴착깊

개 정 내 용	
종 전	○ 금지유해물질 벤지딘과 그염 4아미노디페닐과 그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단서조항 신설)
개 정	○ <상동>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폴리클로리네이트터페닐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물질 ○ 다만 개정령 시행 당시 추가된 금지물질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경과조치를 규정(영부칙 제5조)

나. 개정이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 등에

산업안전관련법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물질(55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물질(8종) 중에서 중복되는 물질 3종(벤지딘과 그염, 4-아미노디페닐과 그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를 삭제하면서 국제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는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 3종의 물질을 금지대상 물질에 새로이 추가

※ 화학물질관련 중복규제 개선사항으로 규개위 의결사항(2001.4월)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금지물질(55종)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금지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 사례

IO협약 제13호(베인트칠에 있어서 백연 사용에 관한 협약)에서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금지

-폴리클로리네이티드트페닐 :화학물질의 사전통보승인협약(PCO) 규제물질이며, 국내에서는 미사용하고 있고 EU에서 사용금지하고 있음.

-EU 및 선진국에서는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발암성물질로써 사용(국내에서 미사용)을 금지

9.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허가 신설

가. 개정내용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를 허가대상으로 신설하고 허가절차등을 규정(법 제38조, 영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칙 제79조)

개 정 내 용

중 전	○ 디클로로벤지딘 등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로운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적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설)
개 정	○ 종전의 허가 규정에 추가하여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적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영 제30조제2항)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영 제30조의2 규칙 제79조제2항)

나. 개정이유

현재까지 석면 직업병자는 총 17명이며, 이들 중 석면설비 등의 수리·배관공에서 10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 신설함.

다. 선진국의 사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허가수준의 엄격한 관리규정을 두고 있음.

10. 허가대상물질 확대

가. 개정내용

중전의 허가대상물질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금지물질과 중복된 염소화비페닐(PCB)은 삭제하고 크롬산이연 등 7종을 추가함(시행령 제30조관련)

개 정 내 용	
중 전	○ 허가대상 유해물질 <u>염소화비페닐(RCB)</u> (이하 신설) (단서조항 신설)
개 정	○ 허가대상 유해물질 <u>크롬산아연</u> <u>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u> <u>크롬광</u> <u>6가크롬</u> <u>휘발성 콜타르피치</u> <u>황화니켈</u> <u>염화비닐</u> ○ 다만, 추가된 허가물질을 영 시행당시 제조·사용하 는 경우에는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함 (영 부칙 제6조)

나. 개정 이유

염화비닐 등 추가되는 7종 모두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강력한 발암성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발암성발생 등 취급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11. 작업환경측정대상, 주기, 측정횟수 등

가. 개정내용(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116종에서 191종으로 확대하고, 옥외작업장도 측정토록 하며, 신규작업장 또는 신규공정의 경우 30일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6월 1회 실시토록 함. 다만, 보건규칙에서 정한 임시작업·단시간작업 및 분진적용제의 작업은 발암성물질을 제외하고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함.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대행기관이 요청한 경우) 등에서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산업기사 이상인 자격을 갖춘자”로 제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승인되던 작업환경횟수조정 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정도에 따라 횟수조정 승인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개 정 내 용	
중 전	<p><측정대상></p> <p>○ 작업환경측정대상을 소음,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연 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으로 하며, 측정대상인자는 116종임</p> <p><측정주기></p> <p>○ 측정횟수는 보건규칙에 규정하고, 6월에 1회 이상으로 함</p> <p><측정자의 자격></p> <p>○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보건관리자, 지정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대행기관이 요청한 경우)등 고시로 정함</p> <p><측정방법></p> <p>○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로 정함</p> <p><측정횟수의 조정></p> <p>○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승인 여부를 결정 노출기준 미만 : 1년 1회 이상 노출기준 50% 미만 : 3년에 1회 이상</p>
	<p><측정대상></p> <p>○ 작업환경측정대상을 옥내·외 구분없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하며 대상인자를 191종으로 확대함</p> <p><u>보건규칙의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및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u></p> <p><측정주기></p> <p>○ 신규작업장 또는 신규공정의 경우 30일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 1회 이상 실시</p>

개 정 내 용	
개	<p><측정자의 자격></p> <p>○ 당해 사업장 소속 사업위생사업기사 이상인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p> <p><측정방법></p> <p>○ 본 측정 실시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정상작업하에서 개인시료포집법으로 측정 실시, 세부 측정방법 등은 고시에서 정함</p>
	<p><측정횟수의 조정></p> <p>○ 사업주 신청에 의한 검토·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측정결과 노출정도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승인없이 탄력적으로 자동 조정</p> <p>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동물질을 제외한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한 경우에는 3월에 1회 이상 측정 실시</p> <p>내 환경 개선이 용이성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측정 횟수를 획일하여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나, 현행 측정대상이 작업장(소음) 작업(분진)과 업무(연, 유기용제), 물질(특정화학물질)로 다원화되어 있어 대상여부가 불명확하고, 산업발달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함.</p>
정	<p><문제점></p> <p>측정대상임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측정이 불필요함에도 작업장, 작업 또는 업무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측정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p> <p>측정대상이 옥내로 제한되어 있어 조선업 등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상태 우려가 심각함에도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p>

유해인자에 노출이 아주 미미한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특정화학물질 53종의 경우 동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을 측정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제조 또는 사용이 아닌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 측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작업명어원생해방는공정작업환경의상화한작업장측정업종별측정횟수대안개측정회당어통언을반어수있도록한어완제도를확립한후6월이넘어만하면되도록근로자건강관리에물체가임으로써통제도를잘모르거나면거로움으로인하여승인신청을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모두 혜택을 부여토록함. 또한,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사업장도 일률적으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업주의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제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주기를 작업환경정도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토록 탄력적으로 조정함.

다. 외국사례

<작업환경측정 확대>

(1) 미국 :미연방법(CFR)에서는 옥내·외 작업장 구분없이 법적으로 약 440여종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즉시 측정하여 허용기준 미만을 유지하도록 함.

<작업환경측정 횟수>

(1) 미국 : 측정치가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유해인자에 따라 1개월~1년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치가 감시기준(노출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3개월~6월 1회 이상, 측정치가 2회 연속 감시기준 미만인 경우 측정면제

우리나라 PL 사고에 대한 법원 판례

아파트 배관 파이프 파열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0년 9월 8일 판결 선고

가. 사건 개요

원고 갑은 W사가 시공하여 1994.9.2 준공검사를 마친 인천 연수구 연수동 W아파트를 양수받아 같은 해 11월경부터 가족과 함께 입주·사용하여 오던 중 1998.2.2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싱크대 아래쪽에 설치된 난방 분배기에서 온수가 누출됨을 발견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인 피고 C관리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C관리회사의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을은 같은 날 누수현상을 확인한 결과, 난방분배기 중 코크밸브와 연결된 배관파이프가 짧게 설치되는 결함으로 동절기를 맞이하면서 뜨거운 물이 이를 통과할 때 그 배관파이프가 수압에 의하여 약간씩 팽창하고, 그 길이가 미치지 못하여 온수가 옆으로 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우선 온수밸브를 잠근 다음, 같은 달 3일 위 배관파이프를 절단하고 자신이 구입한 새로운 배관파이프를 절단부위에 맞추어 이음쇠(커플링, coupling)를 사용하여 코크밸브와 연결하는 보수작업을 하였다.

같은 해 3 7 05:00경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내의 방에서 모두 잠든 사이에 위와 같이 보수된 배관파이프의 연결부위가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팽음과 함께 터져 코크밸브로부터 분리된 배관파이프로부터 약 76℃ 상당의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원고 병이 방에서 거실 쪽으로 나오다가 이미 흘러나온 온수에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지면서 그의 신체에 온수가 쏟아져 우측 상완, 전완, 좌측 허벅지부터 발등까

지 2도의 다발성 화상을 입게 되었고, 또한 온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 및 가구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원고 갑은 원고 병의 아버지이고, 원고 정은 어머니이다)

한편 1997.3.8W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8.2.25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위 W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배관파이프에 결함이 있는 세대가 소수 있었는데 W사로서는 입주자로부터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곧바로 이를 직접 보수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온수누출사고가 발생한 예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W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에 위 누수현상을 알리거나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W사가 사고부위를 보수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도 더 이상 배관파이프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 C관리회사의 관리인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건 아파트의 시공과정에서 위 난방분배기의 코크밸브와 연결된 배관파이프의 길이가 너무 짧게 설치되거나 그 강도가 낮은 부적절한 재질을 사용하여 공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W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그 공작물인 배관파이프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또는 제조물인 배관파이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W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과정에서 난방분배기의 코크밸브와 연결된 배관파이프의 길이를 짧게 설치한 건축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W사가 설치한 배관파이프에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C관리회사의 직원이 W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배관파이프의 길이를 늘리는 보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W사의 건축상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C관리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C관리회사의 피용자인 을로서는 위와 같이 관리대상 아파트의 건축상 결함을 보수하기 위하여 배관파이프를 잘라내고 이음쇠로 배관파이프를 연결할 경우, 코크밸브와 배관파이프의 연결부위 및 이음쇠부분을 철저히 조여 강한 수압에 의하여도 그 부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온수가 누출되어 그 위험성을 인식하여 위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날 보수를 하던 을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17층에 위치하여 온수를 공급받는데 있어 그 수압이 강할 것이라는 점, 만약 온수가 누출되어 사람이나 물건에 닿으면 화상을 입거나 손괴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연결부분을 느슨하게 조이거나 부적절하게 배관파이프를 연결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C관리회사는 을의 사용자로서 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책임의 제한

한편,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갑과 정은 원고 병의 부모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4세의 원고 병이 위 사고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위와 같이 화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측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로써 C관리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아니하므로 C관리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결론

C관리회사는 원고 갑에게 금 6,644,000원(재산상 손해금 6,144,000원 + 위자료금 500,000원) 원고 병에게 금 8,004,247원(재산상 손해금 7,004,247원 + 위자료금 1,000,000원) 원고 정에게 금 500,000원(위자료)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8.3.8부터 C관리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0.9.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C관리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C관리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C관리회사의 관리인 무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C관리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C관리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C관리회사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C관리회사 관리인 무에 대한 항소 및 C관리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C관리회사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관리회사는 원고 갑에게 금 ₩6,644,000원, 원고 병에게 금 ₩8,004,247원, 원고 정에게 금 ₩500,000원 지급, 원고들의 피고 C관리회사의 관리인 무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관리회사에 대한

나머지 황소를 모두 기각한다.

장난감 주사기 결함 사건

대판 1979. 12. 26 79다1772

가. 사건 개요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하여 '펑' 하고 바늘이 튕겨 나와 왼쪽눈이 좌안동공폐쇄증에 걸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가 주사기 제조업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 내용

대법원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 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이를 몸통에 부착시켜 공기를 압축할 때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 부분이 쉽게 주사기 몸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자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고, “이 건 제품의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변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다. 시사점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 일정한 형식이나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유무의 판단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안전기준은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충족할 만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단속규정으로써 민사책임인 제조물책임과는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책임의 결함판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수단이 될 수는 없다. 

